

게릴라성 집중폭우 포천지역 피해

산·계곡 피서객 고립 속출 ... 1명 사망, 57명 구조

포천지역은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최고 102mm 등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포천시 재난상황실에 의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포천동 461mm를 비롯해 신북면 349mm, 소흘읍 343mm 등 포천시 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1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8일 오전까지 게릴라성 폭우가

강타했다. 3일에는 포천동에 시간당 최고 102.5mm의 쏟아지는 등 간헐적으로 폭우가 내렸다. 9일 하루 동안만 이동면 196mm를 최고로 장수면 171mm, 일동면 167mm의 폭우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 폭우가 내렸다. 시간당 최고 48mm가 내린 2006년 7월 당시 태풍 에우니아로 인해 공공시설 127건에 54억3천600여만원에 비하면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최종 집계나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계곡과 하천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물놀이 하던 30대 남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또 산과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을 구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55분경 일동면 길명리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3명중 한명인 기모씨(남,35세 서울 구로구)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50여분만에 포천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3일 4시경 일동면 수입천에서

물놀이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 8월 1일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낙뢰가 발생해 주택과 전선주 15건의 화재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일 오후 7시40분에는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유원지 계곡에서 정모(61)씨 등 45명의 행락객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시간당 56mm의 집중 호우가 내리

면서 50여cm에 불과하던 계곡물 1.2m까지 불어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었다. 이들은 긴급 출동한 포천소방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40여분만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보다 앞서 오후 5시 30분경 깊이울계곡에서 행락객 오모씨 등 12명이 고립되었다가 안전하게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3일 오후 5시40분경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신북면 가채리 주택 2동이 불려 잡혀 3세대 5명(외국인 세입자 2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게릴라성 폭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포천시 수해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배수불량지역과 하수도 개량공사, 하천준설 사업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포천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포천동 461mm를 비롯해 신북면 349mm, 소흘읍 343mm 등 포천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낙뢰로 인해 주택 배전반과 전선주 등 15건의 화재와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깊이를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을 구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포천시민안전봉사대원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물론 고립된 피서객 구조작업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밖에 포천시는 "이번 폭우피해가 경미했던 것은 그동안 포천시가 추진해 온 하천과 배수로 사업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될 때마다 공직자와 시민안전봉사대,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등의 대응 활동이 크게 공헌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36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객만족 넘어 고객감동이 목표 시민들, 고압적이고 불친절 개선 안돼

지난 3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포천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총 27건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행정혁신 사례 5건과 주니어 벤처단 연구과제 1건이 발표됐다. 발표된 행정혁신 사례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아름다운행정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 ▶중증화장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컨설팅 시스템(S/W) 구축 운영 ▶365 희망·행복·사랑 나눔 운동 실천 등의 사례를 가지고 5개 부서가 참가했다. 또 8급과 9급 새내기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니어 벤처단의 연구사례인 '제1의 포천시를 위한 홍보전략 방안'이 소개됐다. 최우수상은 토일립 시스템 등 과학적 화장실 관리기법을 도입한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와 농작물지도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농업컨설팅 시스템(S/W) 운영' 사례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토일립치리기간 단축, FAX자동화 시스템구축, 이동민원실 운영 등의 사례를 소개한 '아름다운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와 일선 접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를 중점 소개한 선단동의 '365 희망·행복·사랑 나눔 운동'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짧은 공직 경력에도 불구하고 '제1의 포천시를 위한 홍보전략'이란 연구사례를 소개한 주니어벤처단이 노력상을 수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수준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부담미움을 조정할 수 있다."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과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포천시청 임대주택 관리업무 국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차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 허가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조정·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또 분쟁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들이 관계서류를 열람과 조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위원회에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 조정 대상 포함

포천시는 임대주택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과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포천시청 임대주택 관리업무 국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차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 허가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한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조정·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

를 알려줘야 한다. 또 분쟁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들이 관계서류를 열람과 조사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위원회에

서 조정의결서를 알리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은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 진단, 시험, 견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회에서 부담미움을 조정할 수 있다.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되어 있다. 문의한 시민은 8월 21일까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cs21.net나 포천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아파트 드레스룸 · 주방 하드웨어 부품 생산

미래형 최첨단 제품만을 연구·생산하는 동성사



- 근면
- 성실
- 창조

